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인

2013년 1월 9일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국토해양부
장

권 도 엽

●대통령령 제24306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라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1)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공회당·회의장 및 전시장
-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교육연구시설: 교육원 및 연구소
- 3) 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제4조의2제1항제8호 본문 중 “관련자료(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택지개발지구에 한한다)”를 “관련 자료(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택지개발지구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7조제4항제1호 후단 중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한”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2) 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로 한다.

제13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 또는 제7호”를 “제4호”로, “추첨의 방법에 의하되,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를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로 한다.

제13조의3제8호 중 “「신탁업법」에 따라 설립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보고 및 자료제출)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또는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에게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또는 인공 구조물의 개축이나 이전 등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8조의2를 삭제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나.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
 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등을 방해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1호	100	200	300
나.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2호	100	200	300
다.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2호	200	400	800

◇개정이유

택지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공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자료 제출 및 보고 사유를 한정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공공시설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3호라목 및 마목 신설)

택지개발로 조성되는 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택지에 위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현재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원예시설 등 농업관련시설로 한정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호텔업 시설, 공회당·회의장·전시장 등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원·연구소 등 교육연구시설 및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까지 확대함.

나.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자료 제출 및 보고 사유 명확화(안 제14조의2 신설)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자료 제출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지구의 지정권자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자료 제출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또는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인

2013년 1월 9일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국토해양부
장

권 도 엽

●대통령령 제24307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제5호 중 “제55조의4제1호”를 “제55조의4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55조의5에 따른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및 제58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
제46조제4항제3호 중 “제55조의4”를 “제55조의5”로 한다.

제50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한다.

1. 동별 대표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
2.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
3. 제5항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

제50조제8항(중전의 제7항) 중 “하되, 한 차례만”을 “하며, 한번만”으로 한다.

제5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5명”을 “5명(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운영”을 “구성·운영”으로, “선임 및 임기”를 “선임·해임 및 임기”로 한다.

제51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주민운동시설 위탁 운영의 제안

제52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해당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에 대한 만족도를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선정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